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낮은 위험	상 당 위험	다 소 위험	보 통 위험	상 당 위험	매우 높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8년 6월 2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8년 7월 5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 조좌까지 모집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15년 6월 4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약정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18.6.22)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펀드 코드: 64938]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다소 낮은 위험	보통 위험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	--

집합투자기구 특징	주로 아시아 및 호주에 상장된 리츠(REITs) 및 부동산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함
분류	투자신탁, 부동산(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02-6950-0000)
모집(판매) 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18년 7월 5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A	A-e	C1	C-e	S	
가입자격	제한 없음	인터넷뱅킹	제한 없음	인터넷뱅킹	온라인 판매시스템 ^{주2)}	
판매수수료	[선취]납입금액의 1.0%	[선취]납입금액의 0.5% 이하	-	-	[후취] 0.15% 이내 ^{주2)}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연%)	판매	0.74	0.37	1.50	0.50	0.25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 0.75 [신탁업자] 0.05 [일반사무관리회사] -				
	기타	0.0023	0.0000	0.0015	0.0000	0.0018
	총보수비용	1.5423	1.1700	2.3015	1.3000	1.0518
	합성 총보수비용	1.8789	1.5280	2.5863	1.7025	1.4060

※ 주석사항	<p>[상기 외 종류] C2, C3, C4, C5, C-f, C-w, S-1 [보수 지급시기] 판매/운용 등 : 매 3개월 후급, 기타 : 사유발생시</p> <p>주1)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 부담할 수 있음 주2)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주3) 종류C2, C3, C4, C5의 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I. (2) 전환절차 및 방법 참조</p> <p>※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 참조</p>
--------	---

매입 방법	[17시 이전(경과후)] 2(3)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환매 방법	[17시 이전(경과후)] 4(5)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8(9)영업일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직전일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로 아시아 및 호주에 상장된 리츠(REITs) 및 부동산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배당이익과 자본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등의 자산으로 운용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순자산의 50% 이상을 아시아 및 호주지역의 리츠(REITs) 및 부동산 관련 주식에 투자합니다. 섹터별로는 상업용, 오피스, 주거용, 호텔, 산업시설 및 기타 리츠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리츠(REITs)의 개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입니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유추알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유추알펀드'라고도 하며,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립니다.

리츠는 설립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되는데 회사형은 유추알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FTSE EPRA/NAREIT Developed Asia Index 80% + Call 20%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아시아 및 호주의 리츠 및 부동산 관련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리츠 및 부동산 관련 주식의 배당수익과 자본수익이 주된 수익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및 환율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4. 운용전문인력: 유나무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5. 투자실적 추이 (세전 기준, 연도별 수익률,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7.05.26 ~ 18.05.25	16.05.26 ~ 17.05.25	15.05.26 ~ 16.05.25	14.05.26 ~ 15.05.25	13.05.26 ~ 14.05.25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3.31	1.63	4.18	18.84	3.60

(A)					
비교지수	1.13	0.02	1.02	15.53	1.37

주1) 비교지수 : TSE REIT 30% + FTSE S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30% + S&P/ASX 200 PROP 30% + Call 10%

※2017년 3월 29일부터 비교지수가 TSE REIT 30% + FTSE S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30% + S&P/ASX 200 PROP 30% + Call 10%에서 TSE REIT 30% + S&P Singapore REITs 30% + S&P/ASX 200 PROP 30% + Call 10%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7월 5일부터 비교지수가 TSE REIT 30% + S&P Singapore REITs 30% + S&P/ASX 200 PROP 30% + Call 10%에서 FTSE EPRA/NAREIT Developed Asia Index 80% + Call 20%로 변경되었습니다.

주2) 종류A(선취판매수수료 부과)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아시아 리츠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아시아 및 호주의 리츠 및 부동산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이외 채권, 어음 등에도 투자함으로써 해당 투자대상은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목표 환헤지 비율은 환헤지 가능 순자산의 70%이상).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추가형·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며, 투자신탁 설정·해지, 환율변동, 주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 이동 등에 따른 위험	리츠수익은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부동산의 공실을 저하, 세입자 이동, 임대료의 지불채무 불이행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 위험	시장금리가 변동함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부담이 커져 REITs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분류: 2등급(높은 위험)

주)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 내부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판매회사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 위험관리체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수립·변경하며 자산별, 펀드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하위펀드) 선정 및 관리: 하위펀드 후보군에 대해 반드시 사전실사(Due Diligence)를 시행하며 최종적으로 투자할 펀드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된 하위펀드에 대해서는 연 1 회 이상 정기실사 및 분기 1 회 이상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하위펀드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정기적인 펀드 rebalancing 외에도 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벤치마크 대비 초과성과 및 추적오차를 점검하여 하위펀드 위험을 관리합니다.

환위험 관리

1) 환헤지 여부

모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해외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모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2) 환헤지 방법 및 목표 헤지비율

모투자신탁은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통화선물,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환율 변동위험을 헤지합니다. 환헤지 비율은 환헤지 가능한 순자산의 70%이상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모 투자신탁은 추가형·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며, 투자신탁 설정·해지, 환율변동, 주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환헤지의 장단점

외국통화로 표시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헤지를 실시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헤지로 인하여 환차익(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4) 환헤지비용 등

환헤지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단,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과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
 - 1) 종류 C1 수익증권을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 시마다 종류 C2 → 종류 C3 → 종류 C4 →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
 - 2) 종류 C2, C3, C4, C5 수익증권은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수익증권으로 투자자는 종류 C1 수익증권으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3) 요약 재무정보

※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대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의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펀드코드: 64938)											
(종류) 클래스	A	A-e	C1	C2	C3	C4	C5	C-e	C-f	C-w	S	S-I
금융투자 자협회 펀드코 드	63936	BG942	64937	96767	96768	96774	96775	BG943	93952	AI940	AP382	AV56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부동산(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1좌 = 1원, 원본액 기준)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펀드코드: 64938)											
(종류)클래스	A	A-e	C1	C2	C3	C4	C5	C-e	C-f	C-w	S	S-I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63936	BG942	64937	96767	96768	96774	96775	BG943	93952	AI940	AP382	AV56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7. 2. 6	최초설정
2009. 4. 17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한화 아시아 리츠(Asia REITs) 재간접 투자신탁 제1호 → 한화 아시아 리츠(Asia REITs) 부동산 투자신탁 1호(리츠-재간접형))
2010. 4. 1	일반사무관리회사(신한아이타스㈜)와 업무위탁계약 체결
2010. 5. 3	종류 C1 판매회사보수 인하
2010. 12. 10	책임운용역변경(유주영->정상훈)
2011. 1. 1	2단계 판매회사보수 인하 및 시행에 따른 종류C2, C3, C4, C5신설
2012. 3. 19	책임운용역변경(정상훈->하현석)
2012. 7. 10	책임운용역변경(하현석->박준흠)
2013. 1. 15	책임운용역변경(박준흠->김선희)
2013. 5. 8	-법시행령제2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투자신탁명칭 변경 한화 아시아 리츠(Asia REITs) 부동산 투자신탁 1호(리츠-재간접형) =>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2013. 6. 3	-종류 C2b 수익증권의 명칭, 가입자격, 투자신탁 보수 변경 -종류 C-w 수익증권 신설
2014. 2. 21	종류 S 수익증권 신설
2014. 9. 19	종류 S-I 수익증권 신설
2015. 2. 2	비교지수 변경 TSE REIT 30% + UBS Singapore REIT 30% + S&P/ASX 200 PROP 30% + Call 10% => TSE REIT 30% + FTSE S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30% + S&P/ASX 200 PROP 30% + Call 10%
2016. 7.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반영: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2등급(높은 위험)
2016. 7. 20	환매수수료 삭제
2016. 8.	종류 A-e, C-e 수익증권 신설
2017. 3. 29	비교지수 변경 TSE REIT 30% + FTSE S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30% + S&P/ASX 200 PROP 30% + Call 10% => TSE REIT 30% + S&P Singapore REITs 30% + S&P/ASX 200 PROP 30% + Call 10%
2017. 11. 10	책임운용역변경(김선희->유나무)
2018. 7. 5	비교지수 변경 TSE REIT 30% + S&P Singapore REITs 30% + S&P/ASX 200 PROP 30% + Call 10% => FTSE EPRA/NAREIT Developed Asia Index 80% + Call 20%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계약의 종료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계약의 종료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대표전화 : 02-6950-00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18.5.25)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중인 다른 집 합투자기구 규모		
유나무	1983	매니저	6개	582억	-Indiana University 재무학 -기움증권 (4년 8개월) -우리은행 (9개월) -하나UBS자산운용 (1년 3개월) -한화자산운용 (2017.09 ~ 현재)	글로벌멀티 에셋팀

주1) 상기인은 글로벌멀티에셋팀의 매니저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없음

[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18. 5. 25)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 규모		
유나무	1983	매니저	5개	582억	-Indiana University 재무학 -기움증권 (4년 8개월) -우리은행 (9개월) -하나UBS자산운용 (1년 3개월) -한화자산운용 (2017.09 ~ 현재)	글로벌멀티 에셋팀

주1) 상기인은 글로벌멀티에셋팀의 매니저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17.11.10	김선희	유나무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부동산(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종류A	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종류A-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종류C1	제한없음, 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종류C2	종류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종류C3	종류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종류C4	종류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종류C5	종류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종류C-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 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종류C-f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기금, 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종류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종류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S-I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최초납입금액 30억원 이상. 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

(1) 종류 C1 수익증권을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 시마다 종류 C2 → 종류 C3 → 종류 C4 →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

(2) 종류 C2, C3, C4, C5 수익증권은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수익증권으로 투자자는 종류 C1 수익증권으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자투자신탁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신탁재산의 100% 이하 투자

[모투자신탁의 주요 내용]

한화아시아리츠 부동산 모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주요 투자전략	- 순자산의 50% 이상을 아시아 및 호주지역의 리츠(REITs) 및 부동산 관련 주식에 투자 - 섹터별로는 상업용, 오피스, 주거용, 호텔, 산업시설 및 기타 리츠 등에 투자예정
	주요 투자위험	아시아 리츠등 가격변동위험, 신용위험, 이자율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등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로 아시아 및 호주에 상장된 리츠(REITs) 및 부동산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배당이익과 자본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리츠(REITs)의 개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입니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이 유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유추얼펀드'라고도 하며,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립니다.

리츠는 설립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되는데 회사형은 유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취득한도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①모투자신탁	- 100%이하	- 모투자신탁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②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 10%이하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운용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기 타	- 법시행령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투자대상	취득한도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①아시아리츠	- 50%이상	- 아시아리츠는 법 시행령 제 240 조제 2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아시아 및 호주지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함
②주식	- 30% 미만	- 주식은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함
③채권	- 50%미만	- 채권은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함

④ 자산유동화증권	50%미만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함
⑤ 어음	50%미만	어음은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를 말함
⑥ 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이하	파생상품은 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헤지거래를 말함
⑦ 국내외 금리스왑거래	국내외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⑧ 환매조건부매도	보유 증권총액의 50%이하	환매조건부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⑨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⑩ 증권의 차입	상기의 ②주식, ③채권, ④자산유동화증권, ⑤어음의 차입은 20%이하	
기 타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② 동일종목 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③ 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합투자기구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모두자산탁(리츠-재간접형)

구 분	내 용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②동일종목 증권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법 시행령 제 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③동일법인발행 지분증권	<p>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④집합투자증권	<p>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p>

	<p>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마.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⑤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⑧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의 예외 >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③,④,⑤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③,④,⑤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⑥,⑦,⑧,⑨,⑩의 투자한도 및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③,④,⑤,⑥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의 본문, ④의 가 및 나,⑤,⑥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등의 자산으로 운용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순자산의 50% 이상을 아시아 및 호주지역의 리츠(REITs) 및 부동산 관련 주식에 투자합니다. 섹터별로는 상업용, 오피스, 주거용, 호텔, 산업시설 및 기타 리츠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리츠(REITs)의 개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입니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유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유추얼펀드'라고도 하며,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임대·주거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립니다.

리츠는 설립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되는데 회사형은 유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를 통해 주로 아시아 및 호주지역의 리츠(REITs) 및 부동산 관련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FTSE EPRA/NAREIT Developed Asia Index 80% + Call 20%

주1) FTSE EPRA/NAREIT Developed Asia Index : 일본, 홍콩, 호주 등 아시아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리츠 포함) 대표 지수

※2018년 7월 5일부터 비교지수가 TSE REIT 30% + S&P Singapore REITs 30% + S&P/ASX 200 PROP 30% + Call 10%에서 FTSE EPRA/NAREIT Developed Asia Index 80% + Call 20%로 변경되었습니다.

(3) 위험관리 전략

- 위험관리체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수립·변경하며 자산별, 펀드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위험관리부서는 자산별,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 또는 손실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핵심 위험요인을 정의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측정·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본부장에게 포트폴리오 위험, 기준지수 대비 성과,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

-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하위펀드) 선정 및 관리: 하위펀드 후보군에 대해 반드시 사전실사(Due Diligence)를 시행하며 최종적으로 투자할 펀드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된 하위펀드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실사 및 분기 1회 이상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하위펀드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정기적인 펀드 rebalancing 외에도 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벤치마크 대비 초과성과 및 추적오차를 점검하여 하위펀드 위험을 관리합니다.

- 환위험 관리

1) 환헤지 여부

- 모두자산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해외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모두자산탁은 환헤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 환헤지란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2) 환헤지 방법 및 목표 헤지비율

- 모두자산탁은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통화선물,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환율 변동위험을 헤지합니다.
- 환헤지 비율은 환헤지 가능한 순자산의 70%이상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모 투자신탁은 추가형·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며, 투자신탁 설정·해지, 환율변동, 주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환헤지의 장단점

- 외국통화로 표시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헤지를 실시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헤지로 인하여 환차익(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4) 환헤지비용 등

-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4)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두자산탁의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아시아 및 호주의 리츠 및 부동산 관련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리츠 및 부동산 관련 주식의 배당수익과 자본수익이 주된 수익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및 환율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모두자산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고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아시아 리츠 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아시아 및 호주의 리츠 및 부동산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이외 채권, 어음 등에도 투자함으로써 해당 투자대상은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리츠 및 부동산관련 주식 등의 시장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크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 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목표 환헤지 비율은 환헤지 가능 순자산의 70%이상).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추가형·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며, 투자신탁 설정·해지, 환율변동, 주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자연재해 등에 따른 위험	수해, 지진, 화산분화, 해일, 화재, 폭발 등의 재해로 인해 부동산이 파손 또는 노후되면 리츠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이동 등에 따른 위험	리츠수익은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부동산의 공실을 저하, 세입자 이동, 임대료의 지불채무 불이행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 위험	시장금리가 변동함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부담이 커져 REITs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리츠 및 부동산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위험	이 투자신탁이 환율변동위험 헤지를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해 원리금이나 정산금액 등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과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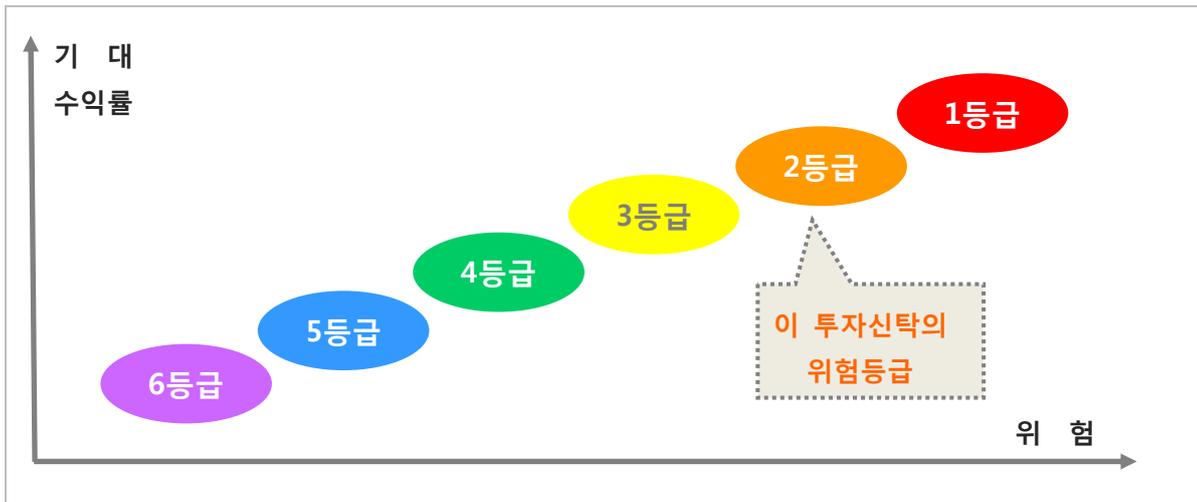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투자설명서 '2부. 집합투자에 관한사항'의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환매'의 '(7)수익증권 환매연기'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투자위험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정정신고서 작성일 현재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며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연환산 표준편차: 9.11%) 산출결과 4등급(다소 높은 위험)에 해당하게 되나, 투자대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험도가 낮게 측정되어 보수적으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 투자위험 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25% 초과
2등급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고위험자산 ¹⁾ 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25% 이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15% 이하
4등급	보통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 ²⁾ 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10% 이하
5등급	낮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저위험자산 ³⁾ 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5% 이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0.5% 이하

-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 등급 이상), CP(A2- 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5) 모자구조의 자펀드인 경우 모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편입비율 및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함
- 6)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형(Fund of Funds)의 경우 주로 편입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부여함
- 7) 펀드별 위험등급은 투자지역, 투자전략, 투자구조, 담보, 신용보강, 레버리지수준, 환위험 노출도, 신용위험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 8)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이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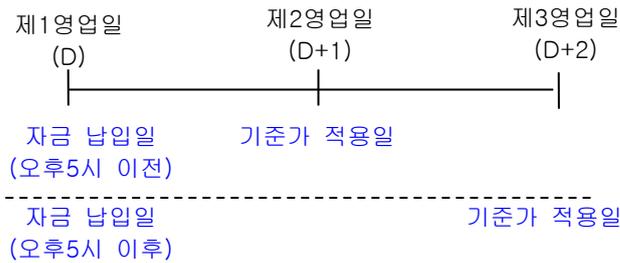
- 종류 A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자자의 가입제한이 없음
- 종류 A-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종류 C1 :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투자자의 가입제한이 없음
- 종류 C2 :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만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종류 C3 :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만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종류 C4 :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만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종류 C5 :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종류 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만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종류 C-e :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종류 C-f :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기금만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종류 C-w :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만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종류 S :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만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종류 S-1 :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최초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만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2)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주2)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3)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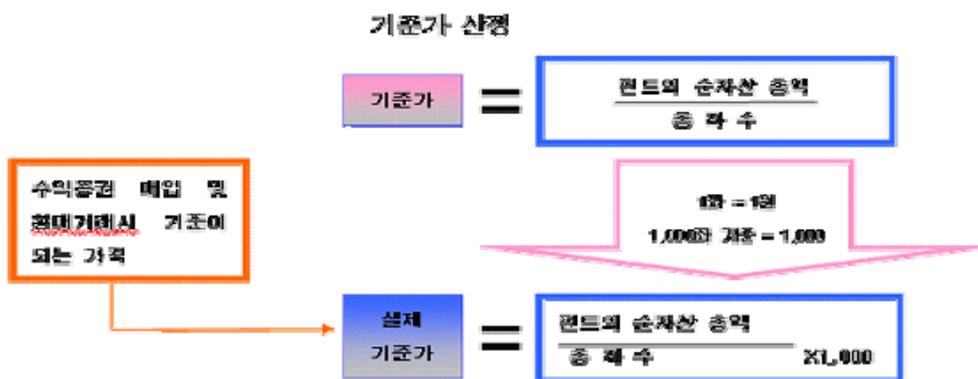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기준가격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hanwhafund.com) 판매회사· 협회(http:// 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에

	서 공표하는 가격
③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한 가격
④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국내주식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은 다음에 따름 1. 증가과리율주1)이 ±2% 범위 이내일 경우 : 한국거래소 최종시가 2. 증가과리율이 ±2% 범위 초과일 경우 :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
⑥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⑦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 (비상장주식, 비상장채무증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 1. 취득가격 2. 거래가격 3.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 투자매매업자 등이 제공한 가격
⑧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시초매매가 상품의 만기시까지 유지되는 상품 : 발행회사 및 채권평가회사2곳이 제공하는 평균 가격 중 낮은 가격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상품의 만기전에 비정기적으로 매매가 예상되는 상품 :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단순산술평균
⑨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환율정보를 이용한 환율

주1) 증가과리율 :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한국거래소 최종시가/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1] × 100

다.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실물자산, 부실자산, 공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투자재산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지급 시기
	종류 A	종류 A-e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f	종류 C-w	종류 S	종류 S-l	
선취 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0%	납입금액의 0.5% 이하	-	-	-	-	-	-	-	-	-	-	매입시
환매 수수료	없음												-

후취 판매 수수료	-	-	-	-	-	-	-	-	-	-	3년미만 환매시 0.15% 이 내 ¹⁾	-	3년미만 환매시
-----------------	---	---	---	---	---	---	---	---	---	---	---	---	-------------

주1) 종류 A-e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 2) 종류 S 수익증권에 대한 후취판매수수료율은 3년미만 환매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환매금액의 0.15% 이내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종류)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 무 관리보 수	기타 비용	총보수 및 비용	합성 총보수 및 비용	증권 거래비용
A	0.75	0.74	0.05	-	0.0023	1.5423	1.8789	0.1249
A-e		0.37			-	1.1700	1.5280	0.1136
C1		1.50			0.0015	2.3015	2.5863	0.1211
C2		1.40			0.0013	2.2013	2.5533	0.1030
C3		1.30			-	2.1000	2.4114	0.1150
C4		1.20			-	2.0000	2.3662	0.1630
C5		1.10			0.0020	1.9020	2.2507	0.1245
C-e		0.50			-	1.3000	1.7025	0.1138
C-f		0.05			-	0.85	0.85	-
C-w		-			-	0.80	0.80	-
S		0.25			0.0018	1.0518	1.4060	0.1232
S-I		0.03			-	0.83	0.83	-
지급시 기	매3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의 해지시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직전 회계연도(2017.2.6 ~ 2018.2.5)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17.2.6 ~ 2018.2.5)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비용은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해외보관대리인의 비용은 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간의 합의된 기일과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291	686	1,106	2,274
종류 A-e	157	486	839	1,832
종류 C1	265	814	1,389	2,950
종류 C-e	175	541	931	2,024
종류 C-f	87	275	481	1,096
종류 C-w	82	259	453	1,031
종류 S	144	448	774	1,695
종류 S-I	85	268	470	1,070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종류 A 수익증권은 1.0%, 종류 A-e수익증권은 0.5%로 가정)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종류S 수익증권은 환매시점에 후취판매수수료 부담여부 및 후취판매수수료율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류S 수익증권의 후취판매수수료는 반영하지 않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주2) 종류C1의 보수·비용은 투자자가 최초로 종류C1 수익증권에 가입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전환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의 예시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7월 20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1 이면 1, 환급비율<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9기, 제10기 및 제11기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산총액 등 회계감사 적용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에 의거 동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통합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1 기	제 10 기	제 9 기
	(2018.02.05)	(2017.02.05)	(2016.02.05)
운용자산	2,152,194,043	4,849,164,414	3,810,472,057
증권	2,122,578,479	4,809,182,431	3,782,247,897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9,615,564	39,981,983	28,224,16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41,633,069	62,927,840	26,598,534
자산총계	2,193,827,112	4,912,092,254	3,837,070,59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9,708,004	79,419,907	41,142,970
부채총계	49,708,004	79,419,907	41,142,970
원본	2,003,933,478	4,807,188,535	3,906,580,437
수익조정금	-441,131,621	-280,506,000	-247,901,108
이익잉여금	581,317,251	305,989,812	137,248,292
자본총계	2,144,119,108	4,832,672,347	3,795,927,621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1 기	제 10 기	제 9 기
	(2017.02.06 - 2018.02.05)	(2016.02.06 - 2017.02.05)	(2015.02.06 - 2016.02.05)
운용수익	173,026,916	124,523,009	-142,407,279
이자수익	289,538	404,076	302,761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72,737,378	124,118,933	-142,710,040
기타수익	0	338,775	234,597
운용비용	47,953,444	69,786,570	76,410,319
관련회사 보수	47,953,444	69,786,570	76,410,319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63,120	111,550	113,920
당기순이익	125,010,352	54,963,664	-218,696,921
매매회전율	0.00	0.00	0.00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목	제11기(2018.02.05)		제10기(2017.02.05)		제9기(2016.02.05)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29,615,564	39,981,983	39,981,983	28,224,160	28,224,16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9,615,564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2,122,578,479	4,809,182,431	4,809,182,431	3,782,247,897	3,782,247,897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2,122,578,479		4,809,182,431		3,782,247,897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41,633,069	62,927,840	62,927,840	26,598,534	26,598,534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633		5,028		4,430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41,628,436		62,922,812		26,594,104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2,193,827,112	4,912,092,254	4,912,092,254	3,837,070,591	3,837,070,591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49,708,004	79,419,907	79,419,907	41,142,970	41,142,97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1,558,113		62,823,594		26,547,392	
4. 수수료미지급금	8,149,891		16,596,313		14,595,578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49,708,004	79,419,907	79,419,907	41,142,970	41,142,970
자 본						
1. 원 본	2,003,933,478		4,807,188,535		3,906,580,437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140,185,630		25,483,812		-110,652,816	
(발행좌수 당기: 2,003,933,478 좌		이익잉여금	581,317,251	305,989,812		137,248,292
전기: 4,807,188,535 좌		수익조정금	-441,131,621	-280,506,000		-247,901,108
전전기: 3,906,580,437 좌)						
(기준가격 당기: 1,056.96 원						
전기: 1,057.11 원						
전전기: 987.61 원)						
자 본 총 계		2,144,119,108	4,832,672,347	4,832,672,347	3,795,927,621	3,795,927,62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193,827,112	4,912,092,254	4,912,092,254	3,837,070,591	3,837,070,591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11기(2017.02.06-2018.02.05)		제10기(2016.02.06-2017.02.05)		제9기(2015.02.06-2016.02.05)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289,538		742,851		537,358
1. 이 자 수 익	289,538		404,076		302,761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338,775		234,597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78,024,192		146,073,026		55,249,756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24,340,431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278,024,192		121,732,595		55,249,756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05,286,814		21,954,093		197,959,796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26,508,493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78,778,321		21,954,093		197,959,796	
운 용 비 용		48,016,564		69,898,120		76,524,239
1. 운용수수료	22,623,974		37,038,594		35,426,242	
2. 판매수수료	23,822,582		30,280,095		38,623,228	
3. 수탁수수료	1,506,888		2,467,881		2,360,849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63,120		111,550		113,92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25,010,352		54,963,664		-218,696,921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62382486		0.01143364		-0.05598167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억좌, 억원)

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종류 A	2017.02.06 - 2018.02.05	26	26	2	2	15	16	12	13
	2016.02.06 - 2017.02.05	27	26	15	16	17	17	26	26
	2015.02.06 - 2016.02.05	45	45	10	10	28	27	27	26
종류 C1	2017.02.06 - 2018.02.05	2	2	2	2	4	4	0	0
	2016.02.06 - 2017.02.05	1	0	2	2	1	1	2	2
	2015.02.06 - 2016.02.05	2	2	2	1	3	3	1	0
종류 C2	2017.02.06 - 2018.02.05	0	0	2	2	2	2	0	1
	2016.02.06 - 2017.02.05	1	1	1	1	1	1	0	0
	2015.02.06 - 2016.02.05	2	2	1	1	3	2	1	1
종류 C3	2017.02.06 - 2018.02.05	0	0	0	0	1	1	0	0
	2016.02.06 - 2017.02.05	1	1	0	0	1	1	0	0
	2015.02.06 - 2016.02.05	0	0	2	2	1	1	1	1
종류 C4	2017.02.06 - 2018.02.05	0	0	0	0	1	1	0	0
	2016.02.06 - 2017.02.05	0	0	1	1	1	1	0	0
	2015.02.06 - 2016.02.05	0	0	0	0	0	0	0	0
종류 C5	2017.02.06 - 2018.02.05	5	5	0	0	2	2	3	4
	2016.02.06 - 2017.02.05	6	6	0	0	2	2	5	5
	2015.02.06 - 2016.02.05	8	8	2	2	4	4	6	6
종류 S	2017.02.06 - 2018.02.05	3	3	0	0	1	1	3	3
	2016.02.06 - 2017.02.05	3	3	3	3	3	3	3	3
	2015.02.06 - 2016.02.05	1	1	4	4	1	1	3	3
종류 C-w	2017.02.06 - 2018.02.05	12	11	1	1	12	12	0	0
	2016.02.06 - 2017.02.05	0	0	36	35	24	23	12	11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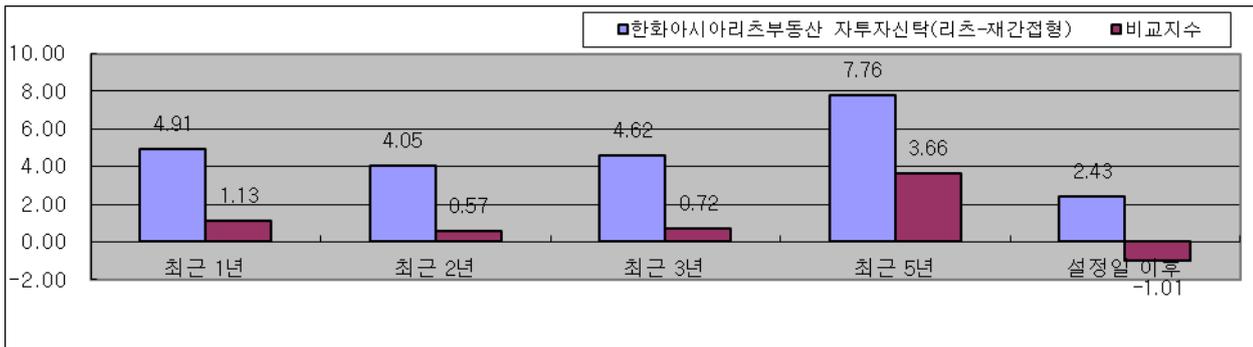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7.05.26 ~ 18.05.25	16.05.26 ~ 18.05.25	15.05.26 ~ 18.05.25	13.05.26 ~ 18.05.25	07.02.06 ~ 18.05.25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4.91	4.05	4.62	7.76	2.43
비교지수	1.13	0.57	0.72	3.66	-1.01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A)	3.31	2.47	3.04	6.13	0.87
비교지수	1.13	0.57	0.72	3.66	-1.01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1)	2.54	1.70	2.27	5.34	0.05
비교지수	1.13	0.57	0.72	3.66	-1.01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S)	3.82	2.97	3.54		7.88
비교지수	1.13	0.57	0.72		4.73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A-e	3.70				1.12
비교지수	1.13				-0.56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e	3.57				1.01
비교지수	1.13				-0.56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2)	2.64	1.80	2.37	11.56	11.66
비교지수	1.13	0.57	0.72	10.75	10.36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3)	2.75	1.91	2.48	0.30	1.23
비교지수	1.13	0.57	0.72	0.54	1.51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4)	2.88	2.02	4.87	7.99	9.39
비교지수	1.13	0.57	2.79	7.84	8.38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5)	2.95	2.10	2.67	5.76	7.96
비교지수	1.13	0.57	0.72	3.66	5.59

- (주1) 비교지수 : TSE REIT 30% + FTSE S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30% + S&P/ASX 200 PROP 30% + Call 10%
-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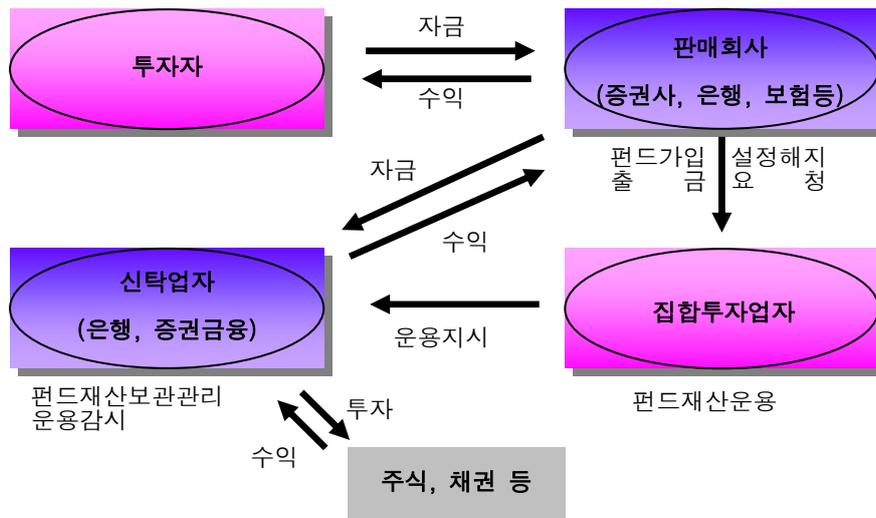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7.05.26 ~ 18.05.25	16.05.26 ~ 17.05.25	15.05.26 ~ 16.05.25	14.05.26 ~ 15.05.25	13.05.26 ~ 14.05.25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4.91	3.20	5.75	20.64	5.20
비교지수	1.13	0.02	1.02	15.53	1.37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A)	3.31	1.63	4.18	18.84	3.60
비교지수	1.13	0.02	1.02	15.53	1.37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1)	2.54	0.86	3.41	17.95	2.82
비교지수	1.13	0.02	1.02	15.53	1.37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S)	3.82	2.12	4.68	19.42	
비교지수	1.13	0.02	1.02	15.53	
한화아시아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A-e	3.70	-2.29			

	(0.00)	(0.00)	(0.00)	(83.35)	(0.00)	(0.76)	(0.00)	(0.00)	(0.00)	(15.89)	(0.00)	(2.00)
JPY	0	0	0	7	0	0	0	0	0	1	0	7
	(0.00)	(0.00)	(0.00)	(89.95)	(0.00)	(0.19)	(0.00)	(0.00)	(0.00)	(9.86)	(0.00)	(31.00)
SGD	0	0	0	7	0	0	0	0	0	0	0	8
	(0.00)	(0.00)	(0.00)	(95.25)	(0.00)	(0.26)	(0.00)	(0.00)	(0.00)	(4.49)	(0.00)	(33.00)
USD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합계	0	0	0	21	0	0	0	0	0	2	1	23
	(0.00)	(0.00)	(0.00)	(89.75)	(0.00)	(0.72)	(0.00)	(0.00)	(0.00)	(6.89)	(2.65)	(100.00)

주1)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전화) 02-6950-0000	
회사 연혁	2011.09.19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출범 (한화투자신탁운용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합병)	
	2018.06.04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푸르덴셜자산운용	1982.06 국민투자신탁 설립 1998.02 국민투자신탁운용 설립 (국민투자신탁에서 운용조직 분리) 1999.02 현대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4.02 미국 Prudential Financial 자회사로 편입, 푸르덴셜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10.06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
한화투자신탁운용	1988.04 제일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6.08 한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자본금	600억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목	제30기	제29기	항목	제30기	제29기
	('17.12.31)	('16.12.31)		17.1.1~17.12.31	16.1.1~16.12.31
현금및현금성자산	60,819	25,403	영업수익	101,240	76,57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1,565	33,160	영업비용	50,284	41,925
매도가능금융자산	10,889	40,674	영업이익	50,956	34,645
종속기업투자	36,828	25,459	영업외수익	894	1,900
대여금및수취채권	73,977	43,428	영업외비용	1,903	979
유형자산	2,991	2,027	법인세차감전	49,947	35,567
투자부동산	-	-	법인세비용	11,789	8,322
무형자산	4,864	5,382	당기순이익	38,158	27,245
이연법인세자산	2,056	1,460			
기타자산	842	584			
자산총계	214,831	177,577			
예수부채	423	200			
미지급금 및 기타금융부채	10,729	7,392			
충당부채	766	578			
순확정급여부채	-1,186	-231			
당기법인세부채	8,606	5,749			
기타부채	573	427			
부채총계	19,991	14,115			
자본금	60,000	60,000			
자본잉여금	8,324	8,32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44	-1,204			
이익잉여금	127,540	96,341			
자본총계	194,920	163,462			
부채및자본총계	214,831	177,577			

라. 운용자산 규모

(2018. 5. 25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단기 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 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32,109	32,972	3,648	0	6,406	15,041	0	21,533	40,440	303	60,898	213,349

2. 운용관련 업무 신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전 화) 1644-9999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bstar.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전 화) 02-2168-0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구 분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 Pricing Inc.	FN 자산평가
-----	--------	----------	------------------	---------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88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 02-721-5300
홈페이지 주소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기의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보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상기 3) 및 4)에 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기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

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업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3)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주1)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이외의 변경사항은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회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변경된 기준가격이 처음 기준가격 대비 1000분의 1을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에 한함)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2017. 5. 26 ~ 2018. 5. 25)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가. 증권거래	평가항목	운용에 대한 기여도	주문체결능력	비용 또는 수익	정보제공 및 settlement	합계
	항목가중치	50%	15%	10%	25%	100%
나. 장내파생상품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평가항목은 5 척도(A, B, C, D, E)로 평가 * 각 등급별 투자중개업자의 비율은 A(15%), B(20%), C(30%), D(20%), E(15%)를 원칙, 상하 5% 범위 이내 조정 * 각 평가자가 평가한 5 척도의 환산점수는 A(10 점), B(8 점), C(6 점), D(4 점), E(2 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거래 자산별로 일정한 수의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로 선정
--	--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과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

	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사모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